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정 보 통 신 진 흥 및 융 합 활 성 화
등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35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담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원 등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을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 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30조의3(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간”이라 한다)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회신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적어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양자 클러스터에 대하여 양자 클러스터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양자 클러스터의 변경(제4항에 따른 양자 클러스터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양자 클러스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청하는 경우 양자 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 클러스터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양자 클러스터개발사업 시

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양자 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양자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양자 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가 양자 클러스터 개발 계획안의 세부 계획을 법 제7조의 전략위원회에서 심의 받지 아니한 경우
2.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양자 클러스터를 전혀 조성하지 않은 경우

⑥ 법 제2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자 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u> <u><신 설></u>	<u>제3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u> <u>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u> <u>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 흥원</u> <u>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 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u> <u>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u> <u>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 른 국립전파연구원</u>

<신 설>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의3(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간”이라 한다)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적어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양자 클러스터에 대하여 양자 클러스터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양자 클러스터의 변경(제4항에 따른 양자 클러스터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양자 클러스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청하는 경우 양자 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 클러스터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의 제한이나 양자 클러스터개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양자
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양자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
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
역에 대한 양자 클러스터의 지
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변경
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가 양자
클러스터 개발 계획안의 세부
계획을 법 제7조의 전략위원회
에서 심의 받지 아니한 경우

2.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변경
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양자 클러스터를
전혀 조성하지 않은 경우

⑥ 법 제2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1.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명칭 · 위치 및 면적</u> <u>2.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u> <u>3.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u> <u>4.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428